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중복감사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과 위원장·상임위원의 임명, 의안의 발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안 제8조)
-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실무협의회 구성, 간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제15조)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안 제16조)
- 위원장의 도의회 출석·답변(안 제17조)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0.12.22.) 되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별표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충청북도경찰청장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 【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요약)】

**가. 지역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별표] 【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요약)】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안 제3조에서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과 위원장·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는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으로 사무국장이 상임위원을 겸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구성하고,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6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음.

- ▶ 다만, 안 제16조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정함에 있어, 표준조례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 조례안에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로 규정하였는데, 이와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에서는 도의회 요구시 위원장의 출석·답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 자치경찰제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이 아니라 경찰 조직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근무하면서 각자 업무를 보는 형태로서, 기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사무의 복합성으로 인해 지휘·감독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이고,
- 또한,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로서 지역 생활안전 및 긴급구조,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등 지역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